

성북구-정릉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업무협약

성북구와 정릉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성북구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장과 권익향상을 위한 '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전문강사 양성교육'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 (목적) 본 협약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과 권익향상을 위한 '청소년 노동인권 전문강사 양성교육'에 대하여 상호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협력의 범위)

- 가.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전문강사 양성 및 훈련
- 나.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강사 선정
- 다. 사업 홍보 및 교육생 모집·선발
- 라.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현장견학 및 실습
- 마. 기타 교육을 위해 필요한 공동사업

제3조 (의무사항) 업무협약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약서상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상호 협력의 원칙하에 우호적으로 해결해나가도록 한다.

제4조 (협약기간) 본 협약의 기간은 1년으로 하고 협약 당사자 중 일방의 해약 통보가 없으면 자동으로 협약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며, 당사자의 사정으로 업무 협약의 해약 및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1개월 이전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제5조 (기타사항) 본 협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일반사항은 당사자 간 상호 협의 하에 정한다.

제6조 (효력) 본 협약은 상호간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며,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에 기명·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6년 1월 일

서울특별시 성북구
구청장 김 영 배

정릉여성새로일하기센터
센터장 오 정 희